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체계 정비 및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근거 신설〉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660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66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5. 11. 27.
- (3) 회 부 일 : 2025. 11.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공학사의 자격증 교부, 결격사유,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조공학사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응시자격 제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등).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공학사의 자격 및 국가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보조공학사의 업무, 시험관리 위탁, 응시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보조공학사”란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하 “보조공학사”라 한다)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5조(보조공학사의 자격 및 업무 등) ① 보조공학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단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조공학사는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종류·취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신설>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제3항 및 제4항-----

-----.

제15조의2(국가시험 등) ①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응시자격 제한 등) ①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u>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u>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및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u>
--	--

2.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보조공학사의 자격증 교부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보조공학사는 장애인,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각종 상용 보조공학기기를 개발, 유지, 보수하며 개인에 맞게 맞춤·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함.¹⁾²⁾
- 구체적인 자격요건·종류·취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³⁾

1) 통계청. (2024). 한국표준직업분류: 제8차 개정판.

2) 최근 3년간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2022년 167명, 2023년 287명, 2024년 290명임.

3) 위탁에 관한 법률상 근거는 없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하 “보조공학사”라 한다)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종류·취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보조공학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해야 한다.

②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했을 것.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단체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했을 것.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의 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 과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4.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5. 응시 절차 및 수수료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④ 국가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개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종류·취득방법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자격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종전에는 보조공학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 및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규율하는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다른 보건의료인력 국가자격 시험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수행하고 있는 시험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가시험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 정의 조항에서는 보조공학사를 ““보조공학사”란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미 개정안 제15조제2항에서 보조공학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공학사의 개념이 사실상 해당 조항들에서 확정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정의) 4. “보조공학사”란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제15조의2(국가시험 등) ② 보조공학사는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 아울러, 개정안 부칙의 적용례에서는 제1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만이 이 법 시행 이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15조의3제2항 역시 신설되는 불이익 처분 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적용례에서 제2항과 제3항을 함께 규율하여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 제15조의3제2항	개정안 제15조의3제3항
제15조의3(응시자격 제한 등) ② 부정 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5조의3(응시자격 제한 등) ③ 보건복지 부장은 부정 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및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 보조공학사 자격취득 방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자격요건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시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에 공감함.
- ☐ 다만, 정의 규정에 보조공학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은 개정안 제15조에서 보조공학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2